

의안번호	2126415
의 퇴 인	백종헌의원
회 답 일	2024. 1. 31.
추 계 번호	24C0105

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9조의2 신설 (적십자 자원봉사회의 구성)	○ 적십자사는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십자 자원봉사회를 구성함(제1항) ○ 적십자 자원봉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함(제2항)	의무규정
2	안 제24조의2 신설 (포상)	○ 보건복지부장관은 적십자사업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상(褒賞)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9조의2 신설 (적십자 자원봉사회의 구성)	○ 현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는 일반봉사회, 재난·심리·안전봉사회, RCY(초·중·고·대)로 구성되며, 전국, 시·도, 시·군·구, 읍·면·동 단위로 협의체 조직을 갖추어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○ 개정안은 대한적십자사의 적십자 자원봉사회 구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,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2	안 제24조의2 신설 (포상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적십자사업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 사업의 확대 및 추진 규모 등을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추가재정소요의 추계가 불가능

- 개정안은 적십자사업의 공로자·모범자에 대한 포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

-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적십자사업의 공로자 및 모범자를 대상으로 포상을 실시할 경우 현행 사업 확대 또는 신규 사업 추진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, 현 시점에서 적십자사업 공로자 및 모범자에 대한 포상금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함
 - 현재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포상은 공모형 포상프로그램인 ‘대한민국나눔국민대상’(보건복지부·KBS·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동주최)¹⁾ 및 ‘대한민국자원봉사대상’(행정안전부 주최)을 통하여 비정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

[표 1] 최근 3년간(2021~2023년)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자 포상 실적

(단위: 명)

	2021	2022	2023	합 계
훈장	—	1	—	1
포장	1	1	—	2
대통령표창	7	3	6	16
국무총리표창	9	6	5	20
합 계	17	11	11	39

자료: 대한적십자사 제출자료

- 참고로, 유사 기관·단체의 최근 3년간(2021~2023년) 포상 현황은 다음 [표 2]와 같음

[표 2] 최근 3년간(2021~2023년) 유사 기관·단체의 포상 실적

(단위: 명)

구 분		2021	2022	2023
새마을운동중앙회	훈장	26	30	31
	포장	27	30	31
	대통령표창	66	73	74
	국무총리표창	84	92	96
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	훈장	40	40	38
	포장	5	5	5
	대통령표창	—	—	—
	국무총리표창	—	—	—
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	훈장	5	5	6
	포장	5	5	6
	대통령표창	20	20	22
	국무총리표창	24	24	27
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	훈장	3	3	3
	포장	3	5	5
	대통령표창	15	16	15
	국무총리표창	21	23	22

자료: 새마을운동중앙회,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,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,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제출자료

1) 2023년 기준 포상자를 대상으로 최대 50만원의 상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음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윤경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윤경	02-6788-4742	yoonklee@assembly.go.kr